Vol.202
2019. 03

금융투자
Financial Investment



해외금융투자산업 동향
- 시장 및 산업 관련 동향
- 주요 플레이어(player) 동향

COMPLIANCE NEWS
- 자율규제 관련 추진사항

통 계
- 펀드 수탁고
- 채권장외시장통계

금융투자협회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C·O·N·T·E·N·T·S



해외금융 투자산업 동향

시장 및 산업 관련 동향 03

01 HKMA, 중국과 국경간 금융서비스 확대 추진 발표 03
02 글로벌 자산운용사, MiFID II 이후 리서치 비용 대폭 감축 04
03 글로벌 신용평가사 Fitch, 영국 부동산펀드 위험 경고 05

주요 플레이어 (player) 동향 06

04 BNP파리바, 인도네시아 자산관리사업 확대 추진 06
05 JP모건, 블록체인 기반의 'JPM Coin' 발행 계획 발표 06
06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유럽 핀테크 기업에 첫 투자 07
07 알리바바, 중국 최대 투자은행 CICC 주식 대량 매입 08
08 노르웨이 오일펀드,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실적 기록 08
09 씨티그룹, 콜센터 부문의 대규모 감축 가능성 언급 09

COMPLIANCE NEWS

자율규제 관련 추진사항 10

01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 10
02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개정 11
03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개정 13

통계

펀드 수탁고 15

채권장외시장통계 17

해외 금융투자산업 동향

시장 및 산업 관련 동향

01 HKMA, 중국과 국경간 금융서비스 확대 추진 발표 (2/19, South China Morning Post)

■ 홍콩 중앙은행(HKMA, Hong Kong Monetary Authority)의 Norman Chan Tak-lam 총재는 Greater Bay Area* 통합의 일환으로 중국과 국경(cross-border)간 모바일결제, 계좌개설, 자산관리 서비스 허용을 추진할 것이라 밝힘

* (Greater Bay Area) 중국정부가 홍콩, 마카오와 광둥성 9개 도시를 하나의 메가급 경제권으로 통합하기 위해 수립한 경제개발구역

- 국경간 자산관리와 무역결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위해 중국 인민은행(PBOC)의 관계자들과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
- 이번 계획으로 홍콩이나 마카오의 금융회사들이 Greater Bay Area 내에 있는 중국 본토의 주요 도시에서 직접 뮤추얼펀드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임

■ 모건스탠리 중국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Robin Xing은 Greater Bay Area의 GDP가 2030년 2조3천억달러에서 4조1천억달러로 영국의 GDP 보다 두 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

02 글로벌 자산운용사, MiFID II 이후 리서치 비용 대폭 감축 (2/18, FT)

- MiFID Ⅱ*와 관련한 CFA협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동 규제 시행 이후 리서치예산을 대폭 축소하였으며, 규모가 큰 운용사들이 관련 예산을 더 큰 폭으로 감축한 것으로 나타남

  * MiFID Ⅱ는 그간 자산운용사가 브로커리지 서비스의 대가로서 무료로 제공받던 리서치 자료에 대해 리서치 비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증권사에 지급하도록 규정

  - 관리자산(AUM) 규모가 2천5백억유로 이상인 자산운용사들은 리서치 비용을 평균 11% 감축했으며, 일부는 50%까지 감축함

  - 반면 관리자산 규모가 10억~20억유로인 운용사들은 리서치 비용을 평균 5.5% 줄였고, 10억유로 미만인 자산운용사들은 대체로 변함이 없었음

-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지불하는 리서치 비용은 AUM 대비 매우 작은 비중임을 고려할 때, 업계에서는 규모가 큰 회사와 작은 회사간의 MiFID Ⅱ 규제에 따른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증가

  - CFA협회의 리서치 책임자인 Rhodri Preece는 소규모 자산운용사의 경우 외부 리서치에 대한 가격협상력이 부족하며, 자체 리서치에 투입할 자원도 부족하다고 설명

  - 독립계 펀드 운용사들을 대변하는 New City Initiative의 CEO Jamie Carter는 리서치 비용 규정은 소규모 자산운용사에게 더욱 치명적이라고 언급

- 영국 금융당국(FCA)은 지난해 리서치 규정과 관련하여 MiFID 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도 리서치 규정이 중소규모의 주식에 대한 리서치 커버리지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음

03 글로벌 신용평가사 Fitch, 영국 부동산펀드 위험 경고 (2/27, FT)

■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Fitch가 브렉시트와 관련한 시장 혼란으로 앞으로 몇 주 사이 영국의 부동산펀드에 대한 거래 중단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

-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과 EU의 협의결과가 실제 투자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영국 부동산펀드의 現 유동자산으로는 환매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특히 상업용 부동산펀드의 유동성이 매우 낮은 상황으로, 지난해 12월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협상안 부결 등의 여파로 영국 부동산펀드의 환매금액은 3.15억 파운드로 급증

■ 영국 금융당국(FCA)은 부동산펀드의 유동성 위험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일일 자금유출 현황을 업데이트하고 있음

- 공모 부동산펀드는 투자자의 추가유입과 환매가 가능하나, 기초자산인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각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긴급한 상황에서 매수자 협상력이 우위인 시장이 형성된다면 자산가치 하락이 확대될 수 있음

주요 플레이어(player) 동향

04 BNP파리바, 인도네시아 자산관리사업 확대 추진 (2/20, StraightTimes)

- BNP파리바는 Wealth Management 부문에서 아시아에서의 관리자산 규모를 현재의 약 1,000억달러 규모에서 2020년까지 1,200억달러로 확대할 것을 추진
  -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에서의 자산관리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며, 수십여 명의 자산관리 전문가 채용을 진행 중임

- 인도네시아는 조세사면(Tax Amnesty)*제도 도입 이후 DBS Group Holdings, Oversea-Chinese Banking Corp 등이 동 지역내 자산관리사업을 적극 확장해 왔음

  * 미신고 자산을 신고하고 일정액의 사면금(자산대비 2%) 납부만으로 모든 법적인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

- 아직까지 인도네시아에서 미신고 자산은 2,260억달러인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 BNP파리바 아태지역 Wealth Management부문 대표인 Pierre Vrielinck은 인도네시아의 잠재력을 볼 때 매우 중요도가 높은 지역라고 강조

05 JP모건, 블록체인 기반의 'JPM Coin' 발행 계획 발표 (2/15, FT)

- JP모건은 기업고객들의 이체업무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
  - 이를 위해 달러와 1:1의 고정된 비율로 환전되는 'JPM코인'을 발행하고, 기업고객들의 계좌 간에 이체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음
  - 동 기술은 아직 프로토타입 수준이며, 조만간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할 예정

- 일부 전문가들은 은행 내 이체에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JP모간도 은행간의 실시간 지급결제와 관련한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JPM코인의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다양한 활용 가능성 등 향후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

- 다른 금융기관들도 블록체인에 대한 연구나 활용 시도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HSBC는 FX거래 부문에 "FX Everywhere"라고 불리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개발하여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음

06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유럽 핀테크 기업에 첫 투자 (2/9, Nikkei Asian Review)

- SoftBank의 Vision Fund는 영국의 디지털 뱅킹 스타트업 기업인 OakNorth Holdings에 3억9천만달러를 투자할 예정
  - 2015년 9월 출범한 OakNorth는 영국의 중소기업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여 37억 달러의 자금을 대출하였으며, 이 회사는 다른 대출업자들에게 대출분석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도 하고 있음
  - 이번에 조달하게 되는 투자금은 미국에서의 사업 확장에 사용될 예정

- Vision Fund는 인공지능과 기술기업에 투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 최근 인도의 Paytm, 미국의 Kabbage 등의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였고, 이번 OakNorth에 대한 투자는 유럽 핀테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투자에 해당

07 알리바바, 중국 최대 투자은행 CICC 주식 대량 매입 (2/19, FT)

- 최근 알리바바는 텐센트가 주요 주주로 있는 중국 최대 투자은행인 CICC(China International Capital Corp)의 주식을 대량 매수
  - CICC의 지분을 4.84%까지 확보하여 중국 국부펀드인 CIC(China Investment Corp)와 텐센트의 뒤를 이어 3대 주주로 자리매김
- 중국 시장에서 최고의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전자상거래, 엔터테인먼트 및 전자결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 중
  - 양사의 치열한 경쟁관계는 과거 전자상거래를 넘어 최근에는 금융서비스 및 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

08 노르웨이 오일펀드,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실적 기록 (2/27, FT)

- 노르웨이의 국부펀드인 오일펀드가 2018년 -6.18%의 수익률로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주식투자 부문의 수익률은 -8.5%를 기록
  - 주식시장이 약세장으로 돌아서면서 그 동안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을 늘려왔던 오일펀드의 투자기조에 대한 논란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 오일펀드 CEO인 Yngve Slyngstad는 지난해 11월 이후에도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비중을 확대해 왔으며,
  - 일부에서 제기한 투자기조에 대한 우려에 대해 Contrarian Strategy*를 활용하고 있고 투자성과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 설명

* Contrarian strategy(역발상 투자) : 다수의 투자방향과 반대로 행하는 투자방식

09 씨티그룹, 콜센터 부문의 대규모 감축 가능성 언급 (2/18, FT)

■ 씨티그룹 CEO인 Mike Corbat는 비용절감을 위해 은행 콜센터에서 일하는 수만 명의 사람을 IT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그간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전세계에 근무하는 209,000여명의 직원들에게 기술 발전을 강조해왔으며, 지원부서 인력 2만여명 중 절반 가량이 IT로 대체될 수 있다고 언급
- 씨티는 비용절감을 위해 연간 80억달러를 IT개발에 투자하고 있음
- 대체될 수 있는 씨티그룹의 콜센터 직원 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카드발급, 서명 요청 등 가장 보편적인 업무 등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

■ 이미 몇몇 기업들이 콜센터 부문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는 중

- 영국의 소매업체인 Marks and Spencer는 고객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적합한 부서에 직접 질문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 구글은 개방형 질문에 대한 최상의 답변을 찾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고객 대기시간을 단축시키고 있음

해외 금융투자산업 동향 문의

기획조사실 **서영미** 과장
(ymseo@kofia.or.kr, 2003-9034)

COMPLIANCE NEWS

자율규제 관련 추진사항

01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2019.2.8.)

1. 준법감시인 심의대상에서 감사위원회 부의안건 제외

■ 본회 표준내부통제기준에서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위법·부당행위의 사전예방 등을 위한 준법감시체제의 구축·운영을 의무화하면서

- 이사회 및 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 부의사항에 대한 관계법령 준수 여부의 사전 검토 및 정정요구를 준법감시체제의 필수적 기능으로 명시하고 있음(§18)

■ 동 결과 감사위원회 부의사항에 대해서도 준법감시인의 사전 검토를 득하여야 하는 바,

- 경영진의 통할을 받는 준법감시인이 감사위원회 부의안건을 사전 검토하는 것은 불합리

* 은행권의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대상에 감사위원회 부의사항은 제외(은행 표준내부통제기준 §19)

2.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헷지목적 확인의무 명시

■ 일부 증권사가 일반투자자와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Swap 거래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중개(금감원 보도자료, '18.9.14)

-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매매 또는 중개·주선하는 경우 거래목적(위험회피) 등을 확인하도록 명시(자본시장법 시행령 §186의2 반영)

* (리스크 헤지 목적 거래 요건) ① 위험회피대상 자산 보유(예정) 여부, ② 장외파생거래로 인한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 가능한 손익을 초과하지 않는지 여부

02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개정(2019.2.21.)

1. 개정 배경

■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19.1.15)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를 개정

2. 주요 개정사항

■ **투자자의 충분한 투자검토 환경 마련**

(Ⅱ.온라인소액투자중개 업무)

① 청약 전 적합성 테스트 도입(시행령 §68⑤13의5, '19.2.14 시행)

-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도를 확인하는 테스트를 실시하고, 불합격 시 청약을 제한

② 최소 청약기간(10일) 도입(시행령 §118의16③)

- 투자자가 충분히 검토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최소 청약기간을 10일 이상으로 설정

③ 중요사항 변경 시 고지 강화(시행령 §68⑤13의4)

-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 변경 시 투자자 통지 및 청약의사 재확인 의무화

④ 발행요건 달성 시 고지 의무(시행령 §68⑤13의6)

-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80% 이상인 경우 청약자 통지 의무화

■ **발행인의 발행한도 확대 및 공시 강화**

(Ⅱ.온라인소액투자중개 업무, Ⅲ.발행인 정보게재 및 게재 내용의 사실 확인)

① 발행인의 발행한도 확대(시행령 §118의15①)

- 연간 발행한도를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시행령 §118의15①)

② 발행인의 공시사항 추가(시행령 §118의16①)

- 발행인 게재사항에 모집가액 산정방법·근거 및 발행인과 중개업자의 재무적 이해관계를 추가
- 연간 10억원 이상 모집 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공시 의무 부과

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

(Ⅱ.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업무)

①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 상향(시행령 §118의17④)

- 최근 1년간 동일 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 : (현행) 200만원 → (개정) 500만원
- 최근 1년간 총 누적투자금액 : (현행) 500만원 → (개정) 1,000만원

② 적격투자자 범위 확대(시행령 §118의17③)

- 크라우드펀딩에 최근 2년간 5회&1,500만원* 이상 투자한 일반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

* 부칙 제4조에 따라 '19.12.31.까지는 "1천만원"으로 적용

- 금융투자전문인력(등록 후 3년 이상 경과)을 적격투자자 인정

크라우드펀딩 광고범위 확대

(Ⅶ.투자광고)

- **(현행)**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투자광고 가능
- **(개정)**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를 통한 중개업자·발행인의 명칭, 발행인의 업종 및 증권의 청약기간에 대한 정보제공 허용(법 §117의9①)

재산상 이익 관련 규제 개선

(Ⅹ.재산상 이익의 제공과 수령)

① 인별·회사별 제공한도 폐지 및 공시의무 신설

- **(현행)** 온라인소액중개업자가 투자자·거래상대방에게 재산상 이익 제공 시, 인별·회사별 연간한도 준수 의무화
- **(개정)** 온라인소액중개업자가 특정 거래상대방에게 최근 5개 사업연도를 합산하여 10억원을 초과하여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수령 시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함

②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내부통제 강화

–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및 재산상 이익 제공 현황 이사회 보고 의무 신설

전매제한기간 단축

(Ⅱ.온라인소액투자중개 업무, Ⅴ.중앙기록관리기관 관련 업무)

-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된 증권의 전매제한기간 단축 : (현행) 1년 → (개정) 6개월

발행인의 발행종료 후 정보게재 보완

(Ⅲ.발행인 정보게재 및 게재 내용의 사실 확인)

- 중개업자의 등록 취소 등으로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재무제표 등 결산관련 서류를 게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중앙기록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

03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개정(2019.2.21.)

1. 개정 배경

자문·일임업 등록단위의 개편('19.1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문·일임업의 상품별 등록단위가 통합

〈개편 후 자문·일임업 등록단위〉

금융투자업	취급상품	투자자	최저 자기자본	비고
투자자문업	증권, 파생상품, 시행령(§6조의2)에 따른 모든 투자대상자산	일반·전문	2.5억원	7개단위 → 2개단위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환매조건부매매, 예치금, 채무증권	일반·전문	1억원	
투자일임업	증권, 파생상품, 시행령(§6조의2)에 따른 모든 투자대상자산	일반·전문	15억원	6개단위 → 2개단위
		전문	5억원	

- 이에 자문·일임업 등록요건인 투자권유자문인력·투자운용인력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자문·일임업 등록요건으로 증권 자문·일임 인력 자격을 요구하되,

- 부동산 관련 상품에 대한 자문·일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 자문·일임 인력 요건*을 추가로 요구

* 부동산 관련 교육 또는 경력 추가 구비

※ 기존 규정의 인력요건과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며, 개편된 등록단위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

3. 시행일

■ 2019. 2. 22.

COMPLIANCE NEWS 문의

자율규제기획부 **경필구** 주임
(feel9@kofia.or.kr, 2003-9378)

통 계 (Statistics)

Ⅰ 펀드 수탁고

01 전체펀드 설정액

(단위 : 십억원)

구분			'18.11월말	'18.12월말	'19.1월말	'19.2월말	전월말대비	증감률(%)
설정액	(1) 주식형펀드 소계		83,641	85,183	88,418	87,664	△754	△0.9%
		(1-1) 국내주식형	62,748	64,331	67,606	66,986	△620	△0.9%
		(공 모)	50,121	52,079	55,855	55,499	△356	△0.6%
		(사 모)	12,627	12,252	11,751	11,487	△264	△2.2%
		(1-2) 해외[1]주식형	20,893	20,852	20,812	20,677	△135	△0.6%
		(공 모)	15,651	15,609	15,710	15,673	△37	△0.2%
		(사 모)	5,242	5,243	5,103	5,004	△99	△1.9%
	(2) 채권형펀드 소계		101,235	101,761	104,089	106,832	+2,743	+2.6%
		(2-1) 국내채권형	92,969	93,744	96,051	98,983	+2,932	+3.1%
		(공 모)	23,847	24,061	25,265	26,112	+847	+3.4%
		(사 모)	69,123	69,683	70,786	72,871	+2,085	+2.9%
		(2-2) 해외채권형	8,265	8,017	8,038	7,849	△189	△2.4%
		(공 모)	2,995	2,793	2,842	2,880	+38	+1.3%
		(사 모)	5,270	5,224	5,196	4,969	△227	△4.4%
	(3) 혼 합 주 식 형		10,097	10,133	10,033	10,027	△6	△0.1%
	(4) 혼 합 채 권 형		18,061	17,953	17,535	17,480	△55	△0.3%
	(5) 재 간 접		26,585	26,388	26,152	26,525	+373	+1.4%
	(6) 단기금융(MMF)		103,930	89,626	105,371	105,201	△170	△0.2%
		(법 인)	82,016	68,134	84,233	84,168	△65	△0.1%
		(개 인)	21,914	21,492	21,137	21,033	△104	△0.5%
		(구 법)	0	0	0	0	0	-
	(7) 파생상품		50,906	49,613	49,340	49,401	+61	+0.1%
	(8) 부 동 산		74,265	75,546	76,536	78,108	+1,572	+2.1%
	(9) 특별자산		69,488	71,102	71,764	72,633	+869	+1.2%
	(10) 혼합자산		22,769	23,685	24,314	25,792	+1,478	+6.1%
설 정 액 총 계			560,985	550,998	573,557	579,668	+6,111	+1.1%

(자료 : 금융투자협회)

1) 국내에서 설정된 펀드 중 펀드재산의 30%이상을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이하 같음)

02 전체펀드 순자산

(단위 : 십억원)

구분		'18.11월말	'18.12월말	'19.1월말	'19.2월말	전월말대비	증감률(%)
순자산	(1) 주식형펀드 소계	79,658	79,873	86,278	86,773	+495	+0.6%
	(1-1) 국내주식형	59,013	60,237	65,540	65,098	△442	△0.7%
	(공 모)	48,030	49,693	54,806	54,605	△201	△0.4%
	(사 모)	10,982	10,544	10,734	10,493	△241	△2.2%
	(1-2) 해외주식형	20,646	19,636	20,738	21,675	+937	+4.5%
	(공 모)	15,578	14,823	15,843	16,705	+862	+5.4%
	(사 모)	5,068	4,813	4,894	4,969	+75	+1.5%
	(2) 채권형펀드 소계	102,434	103,149	105,742	108,603	+2,861	+2.7%
	(2-1) 국내채권형	94,301	95,233	97,731	100,730	+2,999	+3.1%
	(공 모)	24,379	24,605	25,867	26,757	+890	+3.4%
	(사 모)	69,923	70,628	71,864	73,973	+2,109	+2.9%
	(2-2) 해외채권형	8,133	7,916	8,011	7,873	△138	△1.7%
	(공 모)	2,953	2,766	2,845	2,903	+58	+2.0%
	(사 모)	5,180	5,150	5,166	4,969	△197	△3.8%
	(3) 혼 합 주 식 형	9,740	9,656	9,842	9,922	+80	+0.8%
	(4) 혼 합 채 권 형	18,016	17,849	17,743	17,753	+10	+0.1%
	(5) 재 간 접	26,864	25,646	26,462	27,458	+996	+3.8%
	(6) 단기금융(MMF)	104,864	90,275	106,101	106,010	△91	△0.1%
	(법 인)	82,763	68,656	84,812	84,805	△7	△0.0%
	(개 인)	22,101	21,650	21,289	21,204	△85	△0.4%
	(구 법)	0	0	0	0	0	-
	(7) 파생상품	49,196	47,200	48,706	49,090	+384	+0.8%
	(8) 부 동 산	75,914	77,174	78,099	79,805	+1,706	+2.2%
	(9) 특별자산	68,791	70,205	70,886	71,911	+1,025	+1.4%
	(10) 혼합자산	22,512	23,252	24,006	25,586	+1,580	+6.6%
순 자 산 총 계		557,998	544,284	573,871	582,916	+9,045	+1.6%
펀 드 수		14,286	14,370	14,565	14,675	+110	+0.8%

(자료 : 금융투자협회)

Ⅱ 채권 장외시장 통계

01 발행시장

(1) 발행통계

(단위 : 십억원)

구분	발행액			잔액	
	'19. 1월	'19. 2월	전월대비	'19. 2월	비중(%)
국채	14,577	13,101	-1,476	66,493	34.3
지방채	348	238	-110	2,085	1.1
특수채	3,894	4,635	741	32,774	16.9
통안증권	11,770	12,090	320	17,144	8.8
은행채	11,040	9,710	-1,330	30,110	15.5
기타금융채	4,152	3,475	-677	14,527	7.5
회사채	9,166	6,261	-2,905	26,137	13.5
ABS	529	1,660	1,130	4,542	2.3
계	55,477	51,169	-4,308	193,812	100.0

* 상기통계는 원천정보 업데이트 관계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 : 금융투자협회)

(2) 신용등급별 수요예측 결과

(단위 : 십억원)

구분		'18. 12월	'19. 1월	'19. 2월
AA급 이상	발행예정금액	-	3,550	2,530
	참여율(%)	0	423	435
A급	발행예정금액	100	740	840
	참여율(%)	618	411	540
BBB급 이하	발행예정금액	-	120	70
	참여율(%)	0	352	529

(자료 : 금융투자협회)

1) 참여율 : 발행예정금액 대비 수요예측시 참여금액 비율
2) 수요예측시작일 기준

02 유통시장 (장외채권거래현황)

(1) 채권종류별 거래대금

(단위 : 십억원)

구분	'19. 1월	'19. 2월	전월대비	연간누계	2018년
국채	199,176	152,290	-46,886	379,425	2,300,483
지방채	996	710	-287	1,798	8,994
특수채	18,812	16,875	-1,937	37,641	220,053
통안증권	84,407	52,870	-31,538	149,344	1,192,440
은행채	57,898	38,792	-19,107	102,177	522,811
기타금융채	30,311	24,087	-6,224	57,849	277,136
회사채	17,002	14,447	-2,555	33,609	140,932
ABS	9,178	5,063	-4,115	15,205	73,877
합계	417,781	305,133	-112,649	777,047	4,736,726

(자료 : 금융투자협회)

(2) 투자자별 순매수 금액

(단위 : 십억원)

구분	'19. 1월	'19. 2월	전월대비	연간누계	2018년
은행	8,479	12,909	4,430	21,388	154,301
자산운용	11,151	9,134	-2,017	20,285	110,543
보험	3,079	2,391	-688	5,470	24,499
기금·공제	1,480	654	-826	2,134	37,180
외국인	-491	1,708	2,199	1,217	54,154
개인	217	146	-71	363	4,319
기타	4,107	2,741	-1,366	6,849	32,125

(자료 : 금융투자협회)

1) 유통시장을 통한 외국인 순매수를 단순 합산한 수치로, 만기상환 금액을 고려한 통계(순투자)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기타 : 선물, 종금, 상호, 국가, 지자체, 기타법인

03 최종호가수익률 추이

일자	국고채권 (3년)	국고채권 (5년)	국고채권 (10년)	국고채권 (30년)	국고채권 (50년)	통안증권 (91일)	통안증권 (1년)	회사채 (무보증3년) AA-	회사채 (무보증3년) BBB-	CD (91일)
2017년말	2.135	2.343	2.469	2.434	2.436	1.573	1.867	2.678	8.942	1.66
2018년 1월	2.274	2.57	2.769	2.683	2.684	1.538	1.862	2.809	9.049	1.65
2018년 2월	2.266	2.519	2.736	2.717	2.719	1.539	1.859	2.817	9.045	1.65
2018년 3월	2.216	2.427	2.624	2.615	2.604	1.55	1.887	2.795	9.012	1.65
2018년 4월	2.216	2.486	2.713	2.703	2.689	1.556	1.868	2.819	9.039	1.65
2018년 5월	2.195	2.479	2.695	2.679	2.670	1.557	1.851	2.816	9.028	1.65
2018년 6월	2.122	2.352	2.556	2.552	2.499	1.545	1.854	2.766	8.976	1.65
2018년 7월	2.123	2.36	2.567	2.532	2.461	1.568	1.885	2.781	8.983	1.65
2018년 8월	1.916	2.113	2.311	2.260	2.195	1.575	1.783	2.416	8.519	1.65
2018년 9월	2.005	2.175	2.357	2.300	2.231	1.614	1.895	2.449	8.516	1.65
2018년 10월	1.939	2.066	2.243	2.141	2.066	1.692	1.890	2.393	8.444	1.70
2018년 11월	1.897	1.972	2.106	1.974	1.908	1.730	1.883	2.367	8.424	1.90
2018년 12월	1.817	1.884	1.948	1.927	1.922	1.760	1.840	2.287	8.358	1.93
2019년 1월	1.809	1.883	2.001	2.048	2.036	1.751	1.827	2.256	8.340	1.86
2019년 2월	1.813	1.876	1.987	2.053	2.026	1.766	1.843	2.261	8.337	1.89

(자료 : 금융투자협회)

1) 월말 기준

04 채권 ETF

(단위 : 백만원)

채권 실시간 지수		ETF		
		종목명	일평균 거래대금	시가총액
국고채지수	MKF 국고채 지수	KODEX 국고채	236	93,786
통안채지수	MK 통안채 지수	KOSEF 통안채	16,566	51,591
	KIS MSB 3M 지수	TIGER 유동자금	250	799,911
	KIS MSB 5M 지수	KBStar 단기통안채	6,620	215,634
특수채지수	MK 머니마켓 지수	KOSEF 단기자금	809	49,420
회사채지수	KOBI 크레딧 지수	KBStar 우량회사채	132	63,150
	KOBI HALF 크레딧 지수	ARIRANG 우량회사채 50	5,061	35,691
혼합지수	KRW CASH 지수	KODEX 단기채권	2,723	1,042,373
	KAP BARBELL 지수	ARIRANG 바벨 채권	14	13,775
	KAP 머니마켓 지수	ARIRANG 단기유동성	76	40,468
	KIS MSB 단기지수	KINDEX 단기자금	59	123,285
	KRW CASH PLUS 지수	KODEX 단기채권PLUS	966	837,136
	KAP 단기 채권 지수	파워 단기채	3	1,264

(자료 : 금융투자협회)

1) 실시간 호가정보(K-BOND)를 통해서 산출되는 채권 실시간 지수를 채권형 ETF의 추적지수로 활용
2) '19. 2월 일평균 거래대금, 시가총액 : '19. 2월말 기준

금융투자 Financial Investment
Vol.202
2019. 03

발 행 월 : 2019. 3
발 행 인 : 권 용 원
편 집 인 : 김 진 억
발 행 처 : 금융투자협회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 금투센터
대 표 전 화 : 02)2003-9000